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철도안전투자 공시 미이행 또는 거짓 공시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73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2216173) ····· 1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철도안전투자 공시 미이행 또는 거짓 공시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안 제82조제2항제1호) ····· 2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2216173)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희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6. 1. 20.

3. 회 부 일 : 2025. 1. 2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1호 등).

Ⅲ. 검토의견

1. 철도안전투자 공시 미이행 또는 거짓 공시 시 과태료 부과 처분 신설(안 제82조제2항제1호)

개정안은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생 략) 2. ~ 12. (생 략) ③ ~ ⑥ (생 략)	제8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63조의2[1]는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철도안전투자”라 함)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 제1조의5[2]에 따르면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 개량, 안전설비 설치, 철도안전 교육·훈련, 연구개발, 홍보, 기타 비용 등 7개 항목의 최근 3년간 투자예산 집행 실적 및 향후 3년간

---

1) 「철도안전법」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안전투자”라 한다)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① 철도운영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투자(이하 “철도안전투자”라 한다)의 예산 규모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0. 7.>
1. 예산 규모에는 다음 각 목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철도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
나. 철도시설 개량에 관한 예산
다. 안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예산
라. 철도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
마. 철도안전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
바.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사.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산 규모를 공시할 것
가. 과거 3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및 그 집행 실적
나. 해당 년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다. 향후 2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3. 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철도운영자의 자금 등 철도안전투자 예산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할 것
4. 그 밖에 철도안전투자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예산을 포함해 공시할 것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5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과 해당 철도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당해년도 포함) 투자계획을 공시하여야 함.

이와 같은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6~2018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음.[3)]

2025년말 기준 철도안전투자 공시 의무대상 철도운영자는 총 22개로, 철도운영자는 매년 5월말까지 투자공시 자료를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www.railsafety.or.kr)과 철도운영자 자체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음.

< 철도안전투자 공시 의무대상 철도운영자(2026년 기준) >

순번	기관	순번	기관	순번	기관
1	경기철도㈜	9	대전교통공사	17	에스지레일㈜
2	공항철도㈜	10	부산교통공사	18	용인경량전철㈜
3	광주교통공사	11	부산김해경전철㈜	19	우이신설도시철도㈜
4	구리도시공사	12	새서울철도㈜	20	의정부경량전철㈜
5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13	서울교통공사	21	인천교통공사
6	남서울경전철㈜	14	서울시메트로9호선㈜	22	한국철도공사
7	남양주도시공사	15	신분당선㈜	-	
8	대구교통공사	16	㈜에스알		

자료 : 국토교통부

3)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16~'20) 추진과제로서, '16년에 서울교통공사, 철도공단 등 6개 기관, '17년 및 '18년에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6개 기관이 안전투자 공시 참여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투자 내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별도의 과태료 등 제재수단이 없어 철도운영자의 책임성 있는 철도안전투자 공시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운영자의 철도안전투자 공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철도안전투자 예산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항공·해운 등 교통 분야에서도 운송사업자의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안전투자의 미공시 또는 거짓공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 수준에 있어 항공분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운분야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항공·해운 분야 안전투자 미공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

구분	공시 주체	미공시 또는 거짓공시 시 과태료 수준
항공 「항공안전법」	항공교통사업자	500만원 이하
해운 「해사안전기본법」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300만원 이하

나. 국토교통부 의견

철도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철도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규정이 필요함.

과태료 규정을 통해 철도운영사가 안전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안전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자계획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자발적이고 투명한 투자 공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항공·해운분야의 유사 입법례 및 과태료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태료 최대 500만원은 적정 수준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1 철도안전투자 공시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목적**)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예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안전우선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함

○ (**도입 경과**) 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실시*('16~'18년, 3차례) 이후 「철도안전법」 **제6조의2 개정**('18.12) 및 본격 시행('19~'25년, 7년간)

*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16~`20) 추진과제로서, `16년에 서울교통공사, 철도공단 등 6개 기관, `17년 및 `18년에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6개 기관이 안전투자 공시 참여

□ 공시 현황

○ (**공시대상**)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받은 **철도운영자*** 22개('25년말 기준)

* 19년) 16개 / 20년) 18개 / 21년) 18개 / 22년) 19개 / 23년) 20개 / 24년 21개 / 25년) 22개

< 철도안전 투자공시 의무대상 철도운영자(`26년 기준) >

순번	기관	순번	기관	순번	기관
1	경기철도㈜	9	대전교통공사	17	에스지레일㈜
2	공항철도㈜	10	부산교통공사	18	용인경량전철㈜
3	광주교통공사	11	부산김해경전철㈜	19	우이신설도시철도㈜
4	구리도시공사	12	새서울철도㈜	20	의정부경량전철㈜
5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13	서울교통공사	21	인천교통공사
6	남서울경전철㈜	14	서울시메트로9호선㈜	22	한국철도공사
7	남양주도시공사	15	신분당선㈜	-	
8	대구교통공사	16	㈜에스알		

○ (**공시내용**) ①철도차량 교체, ②철도시설 개량, ③안전설비 설치, ④철도안전 교육·훈련, ⑤연구개발, ⑥홍보, ⑦기타 비용 등 **7개 항목**의 **최근 3개년** 투자**계획·실적** 및 **향후 3년간**(당해년도 포함) 투자**계획**

○ (**공시방법**) **매년 5월말**까지 투자공시 자료를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www.railsafety.or.kr)과 철도운영사 **자체 누리집**에 게시

참고2 철도안전투자 공시 예시(한국철도공사)

■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철도안전 투자공시 표준서식

「철도안전법」 제6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작성일 : 2025. 5. 28.

공시 기관	기관명(법인명) : 한국철도공사	공시년도 : 2025년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전화번호 : 042-615-3829 FAX : 02-361-8274
	대표자 : 한문희	담당자 : 오경석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안전 투자 공시	합계	계획	소계	2,041,549	1,922,441	1,668,951	1,766,847	2,099,238	2,683,264
			국비	613,164	540,658	537,233	634,296	694,951	798,367
			지방비	43,729	20,651	17,470	14,810	15,549	16,325
			자체수입	1,384,656	1,361,132	1,114,248	1,117,741	1,388,738	1,868,572
		실적	소계	1,819,114	1,989,562	1,940,432			
			국비	591,743	670,722	867,097			
			지방비	25,303	22,339	20,188			
			자체수입	1,202,068	1,296,501	1,053,147			
		실적/계획(%)		89.1	103.5	116.3			
	철도 차량 교체비	계획	소계	938,007	905,397	560,764	627,870	819,276	1,287,942
			국비	15,375	5,683	4,032	13,862	28,613	48,116.0
			지방비						
			자체수입	922,632	899,714	556,732	614,008	790,663	1,239,826
		실적	소계	855,985	944,780	564,495			
			국비	14,603	5,683	4,032			
			지방비						
			자체수입	841,382	939,097	560,463			
		실적/계획(%)		91.3	104.3	100.7			
	철도 시설 개량비	계획	소계	639,265	558,485	455,687	510,364	524,551	550,767
			국비	472,889	483,879	357,245	392,608	400,912	420,951
			지방비	7,847	875	11,576	11,216	11,776	12,364
			자체수입	158,529	73,731	86,866	106,540	111,863	117,452
		실적	소계	592,114	656,706	751,690			
			국비	500,465	617,875	686,702			
			지방비	2,907	210	12,633			
			자체수입	88,742	38,621	52,355			
		실적/계획(%)		92.6	117.6	165.0			

	안전 설비 설치비	계획	소계	60,701	51,376	84,666	109,614	143,308	188,119
			국비	54,867	40,083	71,895	75,722	112,618	168,888
			지방비						
			자체수입	5,834	11,293	12,771	33,892	30,690	19,231
		실적	소계	72,735	48,541	95,585			
			국비	69,609	39,403	86,438			
			지방비						
			자체수입	3,126	9,138	9,147			
		실적/계획(%)		119.8	94.5	112.9			
	철도 안전 교육 훈련비	계획	소계	1,156	1,602	5,917	6,068	2,589	2,714
			국비	358	412	4,022	4,051	472	494
			지방비						
			자체수입	798	1,190	1,895	2,017	2,117	2,220
		실적	소계	1,803	2,156	6,358			
			국비	380	557	4,543			
			지방비						
			자체수입	1,423	1,599	1,815			
		실적/계획(%)		156.0	134.6	107.5			
	철도 안전 연구 개발비	계획	소계	2,293	2,509	3,304	46,292	48,596	51,014
			국비	1,196	1,264	1,064	44,267	46,476	48,795
			지방비						
			자체수입	1,097	1,245	2,240	2,025	2,120	2,219
		실적	소계	1,729	2,503	3,089			
			국비	725	1,102	1,013			
			지방비						
			자체수입	1,004	1,401	2,076			
		실적/계획(%)		75.4	99.8	93.5			
	철도 안전 홍보비	계획	소계	697	248	7	5	6	7
			국비						
			지방비						
			자체수입	697	248	7	5	6	7
		실적	소계	662	238	4			
			국비	12					
			지방비						
			자체수입	650	238	4			
		실적/계획(%)		95.0	96.0	57.1			
	기타 비용	계획	소계	399,430	402,824	558,606	466,634	560,912	602,701
			국비	68,479	9,337	98,975	103,786	105,860	111,123
			지방비	35,882	19,776	5,894	3,594	3,773	3,961
			자체수입	295,069	373,711	453,737	359,254	451,279	487,617
		실적	소계	294,087	334,638	519,211			
			국비	5,950	6,102	84,369			
			지방비	22,396	22,129	7,555			
			자체수입	265,741	306,407	427,287			
		실적/계획(%)		73.6	83.1	92.9			

※ 각 항목의 실적/계획(%)은 실적 소계/계획 소계 × 100(%) 로 표시함